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13503(본소) 이혼 및 위자료등
2019드단202548(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사 건 본 인 병
변 론 종 결 2019. 10. 25.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9:00까지

2) 그밖에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만나기 2일 전까지 면접교섭의 가능 여부, 시간과 장소, 인도방법 등을 협의하고, 그 협의에 따라 위 일정을 변경하거나 위 일정 외에 추가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면접교섭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정서 상태와 건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장소 :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인도방법 :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주면서 인도하는 방법

라. 허용의무 : 원고(반소피고)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제1, 5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주문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으로서 직장소재지가 부산이고, 피고는 2013. 12. △△시 소재 □□에 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말부부로 지내었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초 ☆☆은행에서 ○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피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만원, 피고로부터 받은 ○만원 등을 합하여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만원에 얻어 분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상의 없이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만원에 매수하여 2015. 12. 7.경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에서 ○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여기

에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만원과 원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원을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 당시 피고로부터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만원을 받았다.

바. 피고는 혼인 전인 2014. 2.경 ◇◇◇에서 도박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여 원고로부터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6. 1.경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였다가 ○만원을 잃었다며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만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5. 24.까지 합계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사. 피고는 2017. 3. 20.경 원고와 상의 없이 퇴사하였고, 원룸임차보증금 ○만원 등으로 또다시 ◇◇◇에서 도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퇴사와 도박 등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가 2017. 4.경 본가로 들어가고, 원고가 2017. 7.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어머니와 함께 ○○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별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아파트를 ○만원에 전세를 주고 그중 ○만원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만원으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8. 2.경 이 법원 2018드단○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3.경 소를 취하하였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이후 위 △△아파트에서 원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금전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피고가 2018. 9.경 또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원고는 2018. 10. 16.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략]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 본소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반소 기각(유책배우자)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본소 일부 인용, 반소 기각

[판단근거]

○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액수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다. 소결론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

2)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분할대상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18. 10. 16. 무렵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함). -----[별지 생략]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90%, 피고 10%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특히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까지 전담한 점, 피고가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7. 4.경 받은 퇴직금을 은닉한 점(다만, 변론종결일 현재 위 퇴직금이 현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위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

을 양육하게 되는 점, 한편 피고 및 피고 어머니가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함께 ○만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정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현재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재산분할정산금** : 22,000,000원(아래에서 계산된 차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함)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21,936,862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219,368,622원 × 10%, 원 미만 버림)

② 피고의 순재산과 위 ①항 기재 금액과의 차액 : 21,936,862원

(= 21,936,862원 - 0원)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환경, 당사자의 양육의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생

활 능력,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다. 면접교섭(직권)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 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면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함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 재산분할청구와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예